

의안번호	2203211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4. 9. 3.
추 계 번호	24F30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2025년 한시적으로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773.9억원, 2026년 4,451억원 등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총 8,224.9억원(연평균 4,1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 2025~2026년간 총 8,045억원(연평균 4,023억원) 감소
 - 노후경유화물차 교체: 2025년 총 179.9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5~2026년

(단위: 억원)

	2025	2026	누적	연평균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66조 제4항)	-3,594	-4,451	-8,045	-4,023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66조의3)	-179.9	-	-179.9	-90
계	-3,773.9	-4,451	-8,224.9	-4,11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 제4항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2	안 제66조의3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009년 8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화물차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6조 제4항 (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	
2	안 제66조의3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하반기에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
 - 다만, 개정안 제66조의3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화물차 중 신규 화물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5년 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
 -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 (안 제66조제4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통계」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 향후 전기·수소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전기·수소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16.7만대)를 기준으로, '21~'23년 연평균 증가율(23.9%)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요건¹⁾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기·수소 자동차는 전부 해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향후에도 모든 전기·수소 자동차가 감면 대상이 된다고 가정
 -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도(전기·수소 140만원)를 전액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전기·수소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2,000만원 수준

□ (안 제66조의3) 다음의 가정을 토대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계

○ 노후자동차에 대한 신차 교체비율은 2017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의한 취득세 감면 세액 실적을 이용하여 추계

－ 2017년 제도는 2006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70%를 감면

－ 2017년 취득세 감면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남

○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 통계를 기초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개정안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노후경유화물차로 정의

○ 노후자동차 교체로 구입하는 신차의 연료별(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 등) 비중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평균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

○ 신차 판매가격은 2023년 신규등록된 연료별 화물차 평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2년 연장(안 제66조제4항)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옴

○ ('12년) 140만원 → ('17~'18년) 200만원 → ('19년) 140만원

□ (감면실적)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18년 567억원에서 2022년 2,502억원으로 증가

[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기·수소 자동차	567	522	710	1,512	2,50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자동차 유형별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전망)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의 신규 취득 대수 및 감면대상 수를 전망

- 전기·수소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향후 '21~'23년 연평균 증감률(23.9%)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수소 자동차 100%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

[표 3] 전기·수소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 2019-2023년

(단위: 건, %)

	2019	2020	2021	2022	2023	'21-'23년 연평균 증가율
전기자동차	35,102	46,776	100,549	164,748	162,639	27.2
수소자동차	4,201	5,848	8,549	10,338	4,710	-25.8
계	39,303	52,624	109,098	175,086	167,349	23.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표 4] 전기차·수소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 2024-2026년

(단위: 대)

	2024	2025	2026
전기·수소 자동차(A)	207,265	256,702	317,931
감면 대상 (A × 100%)	207,265	256,702	317,9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전기·수소자동차 신규취득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 전기·수소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 모든 자동차 취득에 대해 한

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140만원)을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 2,000만원 수준

[표 5] 세수효과 추정

(단위: 대, 억원)

		2025	2026
전기·수소전기차 (제66조 제4항)	감면 대상(B)	256,702	317,931
	감면액 (B×140만원)	3,594	4,4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594억원, 2026년 4,451억원 등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총 8,045억원(연평균 4,0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5~2026년

(단위: 억원)

	2025	2026	누적	연평균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안 제66조 제4항)	-3,594	-4,451	-8,045	-4,023

나.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66조의3)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노후경유화물차”라 함)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경유 외의 연료를 원료로 하는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취득세율) 비영업용 화물차: 5%, 영업용 화물차: 4%
- (감면실적) 2017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의한 취득세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22,911건에 대해 총 96.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제도는 2006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으며,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2017년 취득세 감면 기간은 6개월

[표 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황: 2017년 1~6월

	감면건수(건)	감면액(천원)
지방세 감면현황	22,911	9,688,847

자료: 2018 지방세통계연감

(2) 추계방법

(가)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

- 2017년 특례 시행 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실적 및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비율을 1.95%로 추산
 - 2017년 1월 기준으로 특례 대상 노후자동차 중 경유 승합 및 화물차는 총 164.1만대였으며, 이 중 특례를 적용받은 신차 수는 2.2만대이므로, 교체비율은 1.4%로 추산

[표 3]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자동차 추정

(단위: 대)

2017년 1월 자동차 등록 현황			
승합차(A)	890,757	화물차(F)	3,500,374
노후 승합차(B)	318,760	노후 화물차(G)	1,479,720
경유 승합차(C)	737,450	경유 화물차(H)	3,257,764
승합차 중 경유차	0.828	화물차 중 경유차	0.931
비율(D=C/A)		비율(I=H/F)	
노후 경유 승합차(E=B×D)	263,899	노후 경유 화물차(J=G×I)	1,377,161
노후 경유 승합 및 화물차(E+J)		1,641,060	

주: 노후차 기준은 2017년 제도는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임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2017년 1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7년 당시 특례는 6개월간 적용되었으며,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

터 1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교체비율을 2.8%로 가정

(나) 감면대상 자동차 수

- 개정안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되는 차량 15년 이상(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의 노후 화물차 63만 8,534대이며, 신차 교체비율 2.8%를 적용하여 신차 교체대수는 1만 7,879대로 추산

[표 10] 차량 15년 이상 노후 승용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모델년도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합계
~2003	63	291,059	12,558	303,680
2004	44	33,725	3,370	37,139
2005	68	40,262	4,316	44,646
2006	65	33,135	5,007	38,207
2007	97	53,079	7,920	61,096
2008	339	71,564	7,421	79,324
2009	628	66,147	7,667	74,442
합 계	1,304	588,971	48,259	638,53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료별 국산 화물차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11]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료별 국산 화물차 비중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평균
가솔린	0.6	0.7	0.8	0.7
디젤	91.4	90.2	89.1	90.2
LPG	3.5	3.6	3.5	3.5
하이브리드	0.0	0.0	0.0	0.0
전기	1.2	2.2	3.3	2.2
수소연료전기	0.0	0.0	0.0	0.0
기타연료	3.2	3.3	3.3	3.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단, 이 중 경유차는 동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료별 화물차 비중 및 신차 교체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연료별 화물차 비중 추정치(경유 제외)

(단위: %, 대)

구 분	가솔린	LPG	전기
비중(A)	10.9	54.7	34.4
대수(A×17,879)	1,949	9,780	6,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세수효과 추정

□ 2025년 신규등록된 연료별 화물차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 2023년 연료별 화물차의 평균 공급가액임

[표 13] 연료별 화물차 평균 공급가액

(단위: 만원)

가솔린	LPG	전기
5,882	2,712	4,13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가솔린, LPG, 전기화물차의 평균 공급가액을 고려 시, 모든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한도액(100만원)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3가지 연료 중 가장 평균 공급가액이 저렴한 LPG 화물차를 기준으로 감면액 한도(100만원)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 2,000만원(영업용)~2,500만원(비영업용) 수준

[표 14] 세수효과 추정

(단위: 대, 억원)

		2025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6조의3)	감면 대상(B)	17,879
	감면액 (B×100만원)	17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 자동차 신규등록 이후 15년 이상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화물차를 폐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 구입 및 신규등록시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 17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2025년

(단위: 억원)

	2025
노후경유화물차 교체 시 취득세 한시 감면(안 제66조의3)	-179.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